
2026 GHOST(Gyeonggi Hallyu OST) 뮤직 페스티벌 과 업 지 시 서

2026. 2



경기관광공사
GYEONGGI TOURISM ORGANIZATION

I. 사업안내

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6 GHOST(Gyeonggi Hallyu OST) 뮤직 페스티벌
- 사업목적
 - 한류 콘텐츠와 경기도 DMZ 관광자원을 융합한 「2026 GHOST 뮤직 페스티벌」을 통해 경기도 문화관광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와 외래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2. 행사개요

- 사업기간 : 2026.2 ~ 2026.12
 - 행사일시 : 2026.9. ~ 10 / 2일 or 3일
 - ※ 민간사업자 선정 후 협의를 통해 최종 시기 선정
- 행사장소 :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
- 사업대상 : 국내·외 관광객(예상 방문객 약 5만명 내외)
- 주최·주관 : 경기관광공사
- 주요내용
 - (공연) GHOST(Gyeonggi Hallyu OST) 뮤직 페스티벌
 - (체험) OST 체험 및 한류 콘텐츠 마켓, 시군 홍보관, 투어상품 개발 등
 - (숙박) 캠핑 숙박&웰니스 프로그램 운영(헬스, 푸드, 테라피 등)
- 세부 프로그램

페스티벌 구성			
메인공연	숙박 프로그램	투어 상품개발	체험 및 부대행사
▶ GHOST(Gyeonggi Hallyu OST) 뮤직 페스티벌 - (Day1) 한류 영화, 드라마 OST 콘서트 - (Day2) 2040 타겟 K-Pop 인디밴드 공연	▶ (NIGHT) 캠핑 - DMZ 불멍, 바베큐 - 수풀누리 야간관광 ▶ (DAY) 웰니스 - 테라피(요가, 명상) - 뷰티(퍼스널컬러, 피부) - 로컬(음식, 양조, 핸드메이드)	▶ 촬영지 연계 상품개발 - 주요 드라마 및 영화 연계 투어상품 운영 ▶ 임진각 평화누리 투어 - 임진각 일원 자원 연계 도슨트 투어 운영 ▶ 열차 상품개발 - 코레일 연계 열차상품 개발 및 운영	▶ OST 체험존 - VR/AR 체험, 녹음 체험, 드라마 촬영지 연계 콘텐츠 ▶ 한류 콘텐츠 마켓 - 한류 OST 관련 굿즈 및 기업 홍보 부스 ▶ 홍보관 - 시·군 홍보관 운영

3. 과업 대상

가. 행사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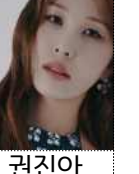
- 행사명 : 2026 GHOST(Gyeonggi Hallyu OST) 뮤직 페스티벌
- 일시 : 2026.9. ~ 10 / 2일 or 3일
 - 민간사업자 선정 후 상호 협의를 통해 최종 개최 시기 선정
- 장소 :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
- 주요 출연진 : 약 15팀 내외
- 입장료 : 민간사업자 선정 후 상호 협의를 통해 최종 입장료 결정
 - 1일권, 2일권, 3일권 등
- 주요내용
 - (공연) GHOST(Gyeonggi Hallyu OST) 뮤직 페스티벌
 - (체험) OST 체험 및 한류 콘텐츠 마켓, 시군 홍보관, 투어상품 개발 등
 - (숙박) 캠핑 숙박&웰니스 프로그램 운영(헬스, 푸드, 테라피 등)
- 행사장(안)



나. 세부 프로그램(안)

① GHOST 콘서트

- 장 소 : STAGE 1 or STAGE 2
- 관 람 존
 - STAGE 1 : 약 1.5만 ~ 2만명 / STAGE 2 : 약 5천명
- 출 연 진(안) : 15팀 내외(S급 6팀 / A급 5팀 / B급 4팀)

구분	주요내용(예시)	비고
레전드 OST 테마 (영화, 드라마 OST 공연)	     이문세 백지영 린 SG워너비 에일리	금
OST 테마 (영화, 드라마 OST 공연)	     태연 규현 거미 윤미래 크러쉬	토
인디감성 테마 (K-POP·인디밴드 공연)	     멜로망스 데이식스 이무진 WOODZ 권진아	일

② 숙박 프로그램

- 장 소 : STAGE 4(평화누리 캠핑장)
- 운영내용 : 음악이 있는 차별화된 캠핑 X 웰니스 체류상품 구성
 - (웰니스) 힐링(요가, 싱잉볼, 명상), 로컬(양조, 푸드), 뷰티(비건 등)
 - (버스킹) 경기도 기회소득 예술인 및 신인 인디밴드 버스킹



③ 투어 상품개발

○ 운영내용

- (G-로케이션 투어) 도내 주요 드라마 및 영화 촬영지 연계 투어상품 운영
- (임진각 평화누리 투어) 임진각 주요 관광지 연계 도슨트 투어 운영
- (열차 상품) 코레일 연계 서울 출발 DMZ 열차 상품개발 및 운영



④ 체험 및 부대행사

○ 장 소 : STAGE 3(체험 및 홍보부스)

가. OST 체험 프로그램 운영

- (녹음 체험) 야외에서 오픈 마이크 방식으로 OST 녹음 체험 제공
- (라이브 버스킹 존) OST 커버 공연이 가능한 오픈 무대 운영
- (한류 OST 힐링존) 자연과 함께 OST 감상 공간 조성
- (OST 퍼포먼스 체험)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(댄스, 합창, 연주 등)
- (OST 명장면 체험) 드라마영화 OST의 명장면 재현 포토존 운영



나. 한류 콘텐츠 마켓 운영

- (한류 OST 굿즈 판매) OST 관련 한정판 머천다이징
- (체험 및 포토존) 드라마, 영화 명장면 AR/VR 체험 공간 운영
- (홍보존) 한류 관련 기업 및 브랜드 홍보(음악제작사, 스트리밍 플랫폼 등)
- (F&B) 드라마 속 등장하는 한식 메뉴 판매(예: '기생충' 짜파구리 등)



한류 콘텐츠 마켓 1



한류 굿즈 부스



AR/VR 체험 부스



한류 기업 홍보관

다. 경기도 홍보관 운영

- (경기도) 31개 시·군 및 주요 관광지 홍보 부스 운영
- (DMZ 접경지역) DMZ 접경지역, 파주, 김포, 연천, 고양 홍보



경기도 홍보관 1



경기도 홍보관 2

⑤ 페스티벌 연계 프로그램(자유제안)

- GHOST 뮤직 페스티벌 연계한 경기도 예술인 및 음악·공연·한류 등 산업 관계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제안

II. 주요 과업

1. 과업명 : 2026 GHOST(Gyeonggi Hallyu OST) 뮤직 페스티벌

2. 과업기간 : 계약 체결일로부터 ~ 2026.12.31.

- 매년 행사 종료 후 예산 확보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최대 2년 (2027~2028년) 연장 가능

3. 총사업비(추정) : 금 1,500,000천원(부가세 포함) 이상

- 사업비 구성(안)
 - (공사) 금 1,000,000천원 + (민간) 금 500,000천원 이상 ~ 1,500,000천원 이하
 - 총사업비는 민간 공동사업자 최종 투자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
 - 공사 분담금은 국비 공모 선정 여부에 따라 변경(증액) 가능
 - 총사업비 지출내역 사후정산 필요.
- 사업비 포함: 행사장 사용료(주차장 포함), 원상 복구비, 음원 및 영상 저작권료, 초상권, 지적재산권, 안전 관리비 등 사업 추진 전반 비용 일체
- 사업비 불포함 : 일반관리비, 대행 수수료, 인건비(단, CS 직원은 협의 후 반영 가능)

4. 선정방식 : 공동사업자 공모

- 방 식 : 공사 분담금 매칭 5억원 이상(최대 15억 이하) 투자하는 사업자 공모
- 공모대상 : 유사 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민간 업체(단일실적 5억원 이상)
- 선정방법 : 서류평가(20%) + 제안서 심사(60%) + 자금 평가(20%)
- 관련 법률 준용 :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 -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,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

5. 기관 간 역할과 권리 규정

구 분	경기관광공사	민간 공동사업자
역할	· 총사업비의 공사 분담금 지급 · 각종 행정 지원 등 · 축제 운영총괄 및 관리·감독 · 사업비 입출금 공동 관리	· 민간 투자 사업비 유치 · 총사업비 입출금 공동 관리 · 행사 운영 및 안전관리 총괄 · 부대행사 기획·운영, 투어 상품 지원,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· 행사장 조성 및 운영상 필요한 법률 검토 등 · 사업비 정산, 수입금 내역 및 결과 보고 등 · 축제 성과평가 및 파급효과 분석 등
권리	· 축제 소유권 ·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·감독 · 협찬 권리 등	· 티켓 판매 및 부대행사 수입 · 투자사, 협찬사의 등급별 홍보 권한 · 기타 행사의 운영권 등

6. 민간 공동사업자 주요 과업

가. 사업관리 분야

- 공사 분담금을 포함한 총사업비 입출금 및 수입금 관리
- 최소 5억 원 이상 ~ 최대 15억 이하 민간 투자 사업비 유치
- 기타 협찬 기업 관리 등

나. 사업추진 분야

축제명	구분	과업 내용
2026 GHOST 뮤직 페스티벌	총괄기획	- GHOST 뮤직 페스티벌 마스터 플랜(전체 조감도 포함) 작성 - 축제 운영 일수 및 요일 제시(2일 or 3일) - 일정별 프로그램 종합 운영 계획 수립 - 축제 운영 매뉴얼 포함 세부 운영 계획 수립 - 신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제안 - 협찬사 유치 방안 수립 및 실행 등
	축제기획	- 분야별 축제(공연, 부대행사 등) 운영 매뉴얼 기획 및 실행 (기획, 공간 조성, 연출, 출연진 섭외, 진행 등) - F&B 참여 업체 유치 및 조성(파주시 관내 업체 참여 50% 이상) - DMZ 일원 관광지 연계 프로모션 기획 등
	출연진	- 축제 테마에 맞는 국내외 아티스트 섭외 및 관리(15팀 이상) ※ 제안서상 명시 된 모든 출연진은 출연 확정서를 포함하여야 하며, 출연 확정서 없을 시 미섭외 출연진으로 간주. - 출연진 차량 및 대기실 운영관리
	공연	- 축제 컨셉에 맞는 무대, 음향, 영상 등 설치 및 운영 - 출연진 셋리스트(곡명, 곡 순서 등) 관리 ※드라마영화 OST - 출연진 공연시 무대 LED 활용 관련 영상(드라마, 영화 등) 송출 필수
	축제장 조성	- 축제장 전체 조감도, 평면도 작성 및 수립 - 친환경 축제장 조성 방안 및 F&B 다회용기 제공 방안 등 - 공연 및 부대행사 진행에 필요한 시설물 일체 - 관람객 입퇴장 동선 및 각 Zone 별 이동 동선 수립 - 주차장 운영 계획 및 운영 관련 시설물(웍스, 라바콘, 배너 등) 설치 - 각종 운영 부스 및 싸인물 등 축제 운영을 위한 부스 시설물 일체 (종합안내소, 미아보호소, 체험 프로그램, 프레스 센터 등) - 운영 프로그램별 편의시설 설치 시설물 일체 (모바일 화장실, 휴식 공간, 스태프 쉼터, 휠체어 및 유모차 대여 등) ※ 외국인 관람객을 위해 모든 싸인물은 국영문 혼용 사용 원칙

축제명	구분	과업 내용
2026 GHOST 뮤직 페스티벌	축제 운영	- 종합상황실 등 모든 프로그램(체험, F&B 등) 총괄 운영 - 축제장 주변 통제, 주차장, 관람객 동선, 인파 관리 등 운영 일체 - 설치 시설물 및 비품 입차 등 관리 - 경호, 진행요원, 주차 요원 등 인력 관리 - 축제장 출입 관련(차량, STAFF, 관계기관 등) 비표 제작 및 배부 - VIP 및 프레스 등 이동 동선 및 출입 관리 - 축제 운영 전반 사진 및 기록영상 촬영 녹화 등
	티켓 판매 및 관리	- 티켓 판매 금액 제시, 예매 플랫폼 선정 및 판촉 운영 - 판매 현황 보고 및 관리 - 티켓 판매 수익금 정산 등
	안전 관리	- 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할 지자체 신고, 이행 -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별 관람객 대비 비례한 운영 인력 투입 배치 - 인파 밀집 및 재해 상황 등 분야별 예방계획 수립 -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시 방역조치 방안 및 안전예방대책 수립 - 특수효과(화약류 등) 사용시 관련 신고 절차 이행 및 안전 계획 수립 - 모든 시설물 및 운영부스 內 소화기 설치 - 축제 운영 관련 모든 투입 인력 및 시설물 대상 보험 가입 ※ 보장 범위 기준 : 행정안전부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 적용 - 안전 유관기관(경찰, 소방, 병원, 모범운전자협회 등) 협조체계 구축 - 축제장 內 의료센터 설치(응급차, 간호사 상주 필수) - 모든 출연진 및 STAFF, 관계자 등 안전관리 교육 이수(한국산업기술시험원) - 축제 개최전 현장 안전교육 실시 후 인력 배치 등 - 기타 안전 관련 관계 법령 준수 및 이행 등
	홍보 마케팅	-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실행 - 축제 전용 홈페이지 및 SNS(인스타, 유튜브 등) 개발 및 운영 - 키비주얼 개발 및 홍보물 제작(홍보 영상 포함) - 축제장 주변 옥외 홍보물(가로등 배너, 현수막, 홍보탑 등) 설치 및 관리 - 인쇄 홍보물 제작 및 배포, 현장 리플렛 제작 및 관리 등 - 기타 언론 홍보 지원 및 티켓 홍보 등
	기타 사항	- 공동사업자 계약 체결 및 이행 - 총사업비 및 수익금 통장 관리 - 세부 개최 결과 보고(주요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 포함) 작성 - 사업 수익금 정산 및 배분 - 기타 사업 추진 관계 법령 준수 및 이행 (개인정보보호법, 중대재해처벌법,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, 공연법 등)

7. 기관별 업무분장(안)

구 분	경기관광공사	민간 공동사업자
주요 업무 범위	· 기본계획, 예산 계획 등 수립 및 검토 · 축제 현장 공동 운영 · 세부실행계획 공동 수립 및 검토 · 분담 사업비 지급 · 총사업비 및 수익금 관리 감독 · 축제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총괄 관리 · 국내외 축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· 축제 개최 관련 유관기관 행정 지원 ·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등 검토 및 승인	· 민간 투자금 유치 · 축제 프로그램 총괄기획 및 마스터플랜 작성 · 기획, 축제장 조성, 현장 운영, 안전 및 위생 관리 등 업무 일체 · 홍보마케팅 및 국내·외 관람객 유치 총괄 · 축제 현장 공동 운영 · 축제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지원 · 총사업비 정산 및 수익금 정산내역서 작성·제출 · 축제 추진 관련 대외 협력 및 제반업무 총괄 · 결과보고서(주요성과 및 파급효과 포함) 작성 등

8. 사업수익 정산 방식(민간 공동사업자의 정산 후(後) 수익 배분)

가. 민간 공동사업자의 정산 후(後) 수익 배분 원칙

1) 흑자일 경우 : 민간 투자금 초과 수익 발생부터 순수익(흑자)으로 간주

① (1단계 원금회수) 투자금의 100%까지 민간 공동사업자 수익

② (2단계 협찬금 유치 성과금 배정) 초과 수익이 발생한 경우, 민간 사업자의 협찬금 유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(15%)를 초과수익에서 우선 차감하여 배정

※ 인센티브 산정 한도 : 인센티브는 「최종 유치 협찬금액」과 「발생한 초과수익」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5%를 준용

③ (3단계 잔여 초과수익 배분) ②번을 공제하고 남은 초과수익은

「공사 분담금 : 민간 투자금」의 투자 비율에 따라 상호 배분

2) 적자일 경우 : 민간 공동사업자 단독부담

« 수익금 정산 예시 »

[총사업비] 20억원 = 공사 10억원(50%) : 민간 10억원(50%) 경우

✓ 수익 배분

- 수익 20억원 발생 시 → 10억원 순수익 발생
- 10억원을 공사 5억원(50%) : 민간 5억원(50%) 비율 배분
- 수익 10억원 발생 시 → 순수익 없음
- 수익 8억원 발생 시 → 2억원 손실(민간 공동사업자 단독 부담)

✓ 성과금

- 협찬금(8억) < 초과수익(20억) → 8억 기준
- 협찬금(8억) > 초과수익(5억) → 5억(실제 수익) 기준
- 적자일 때 → 성과금 없음

III. 행정사항, 유관기관 및 민원대응 등

1. 행정사항

가. 정기보고회 개최

- 1) 착수보고회 :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
- 2) 중간보고회 : 행사개최 30일 전
- 3) 결과보고회 : 행사종료 30일 내
- 4) 그 외 자문위원회의(2회 이상), 수시 회의 및 보고회가 개최될 수 있다.

나. 사업비 관리

- 1) 본 사업은 사업비 추진 단계별 계약서에 따라 나눠 사업비를 집행한다.
- 2) 공사 사업비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제반서류 확인 후 지급한다.
- 3) 공사 분담금을 포함한 집행금액 일체에 대한 정산보고를 해야한다.

다.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

- 1)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한다.
- 2)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보고를 제출해야 한다.
- 3) 각 예산별 집행 증빙내역 및 사후원가정산을 포함하여야 한다.
※ 집행 증빙내역 : 카드영수증, 계좌이체확인증, 견적서, 거래명세서, 세금계산서, 참여인력에 대한 과업수행내용, 계약서, 자격증, 원천징수영수증, 참가확인증, 신분증.통장 사본 등
- 4) 기록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사진, 영상 촬영팀을 운영해야 하며, 행사 종료 후 영상, 사진촬영 결과물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5)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스크랩하여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6) 행사 관람객 만족도 조사, 경제파급효과 등 외부 기관을 통한 평가보고 후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
[제출서류 및 시기]

구분	수량(출력물/파일)	시기
사업수행계획서	10부	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
행사운영 세부 매뉴얼 (안전관리 포함 최종본)	10부	행사개최 30일 이전
결과보고서(한글,PPT)	20부	행사종료 후 30일 이내
행사사진 및 기록영상(USB)	2부	행사종료 후 30일 이내
정산보고서 (사후원가정산서)	10부	사업종료 후 30일 이내
평가보고서(한글,PPT)	30부	사업종료 후 60일 이내
기획보고서	1부	이슈 발생 및 발주처 요청 시

※ 과업파악, 점검 등을 위하여 시, 공사의 요구 시 요청자료 즉시 보고

※ 보고 시 도출된 보완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하고, 보고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동사업자의 부담임

2. 유관기관 및 민원의 대응

- 가. 본 행사 개최를 위하여 경찰, 소방, 보건소 등 유관기관 협의 및 승인. 허가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도움을 받아 수행한다.
- 나. 본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책임 담당자를 지정하여 적정 대처하여야 한다.

Ⅳ. 행정사항, 유관기관 및 민원대응 등

1. 일반사항

가. 과업수행의 기본원칙

- 1) “공사”와 “공동사업자”는 “계약서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.
- 2) “공사”라 함은 경기관광공사를 말하며, “공동사업자”라 함은 경기관광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.

나. 과업수행 기본원칙의 적용방법

- 1)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.
- 2)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상세사항은 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(령·규칙 포함)”, 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” 등 관련법령 및 각종 지침에 준하여야 한다. 또한, 과업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, 공사가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추가 과업지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.

다. 과업수행 일반조건의 부속효력

- 1)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- 2) 공사와 공동사업자 상호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.

라. 과업의 착수 및 보고

- 1)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한다. 다만, 계약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.
- 2)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일정,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(추진조직표, 인력 구성 및 분야별 인력 투입계획), 부분별 수행방법, 보안각서 등 과업

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, 제출하여야 한다.

- 3) 공사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업계획의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공동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- 4) 공동사업자가 과업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, 공사는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동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공동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.

마.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

- 1) 본 과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.
- 2) 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, 실무책임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에 100% 투입 가능한 자로 행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나 전문성을 가진 자로 행사준비 및 진행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 행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3) 과업 진행과정에서의 인력변경은 특별한 사유(사고, 퇴직)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하되, 과업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, 공동사업자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한다.
- 4) 공사는 사업 참여인력이 본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, 공동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공동사업자는 이에 응하여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다른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.

바. 행사의 운영

- 1) 본 과업내용에 맞추어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, 행사 개최, 행사 후 부지정리 등 모든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.
- 2) 행사 중 발생 될 수 있는 불안전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여,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3) 공사는 기획·운영 전반에 걸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, 공동사업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한다.

2. 사업비 지급

- 가. 공사분담금은 계약 체결 후 청구에 의해 계약서에 따라 지급한다.
- 나. 사업비 집행은 세금계산서, 계좌이체,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현금 지출이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공사와 사전 서면 협의하여야 한다.
- 다. 대금 지급 횟수, 시기, 금액을 상호 간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3.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

- 가. 과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합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그 대상 및 절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73~7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에 준하여 따른다.
- 나. 공동사업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.
- 다. 본 과업 수행 중 상기의 내용변경 이외에도 과업내용의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,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.
- 라. 본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·중지 또는 연장 할 수 있다.

4. 과업수행 성과보고 등

- 가.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진행사항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.
- 나.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착수·중간·최종보고 및 수시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당사자 간에 개최여부,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.
- 다.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 및 최종보고는 총괄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.

5. 계약의 이행 중 과업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

- 가. 공동사업자의 임직원, 공동사업자가 고용한 업체 또는 그 업체소속 근로자가 과업의 수행 중 과업 목적물과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동사업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.
- 나. 다만, 공동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와 협의하여 분담한다.

6. 과업의 이행지체와 계약의 해제·해지

가. 지연배상금

- 1) 공동사업자는 계약서에 정한 과업수행 기한 안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관령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.
- 2)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과업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상기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 - 가)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
 - 나) 공사 책임으로 과업 착수 지연 또는 수행 중단된 경우
 - 다) 공동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
 - 라) 그밖에 공동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

나. 계약의 해제·해지

- 1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손해배상 등 민·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.
 - 가)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 제출 투자확약서에 따른 투자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
 - 나)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 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

- 다)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동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
- 라)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
- 마)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
- 바)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공사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
- 사)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·해지에 준하는 경우

7. 과업결과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

- 가. 본 과업과 관련해 제작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, 저작권(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), 판권 등의 제반권리는 공사가 소유하며, 공동사업자는 무단으로 산출물을 활용해서는 안되고,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동사업자가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- 나.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불법적으로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되며, 제3자와의 초상권, 제작물의 판권, 지적재산권 등 제반 권리사항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공동사업자가 진다.
- 다. 공사는 향후 본 과업의 저작물에 대해 수정·편집하여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고, 공동사업자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.
- 라. 상표 및 디자인 제작·출현 시 저작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경비 일체를 부담하여 재개발해야 하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의 손해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.
- 마. 과업 진행 또는 완료 후 발견된 제작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일체의 추가 비용 지급 없이 공동사업자의 책임 하에 수정하여야 한다.

8. “국민건강·노인장기요양·국민연금 보험료” 및 “퇴직급여충당금” 사후 정산

- 가. 정산대상 계약은 “공사, 용역, 물품제조” 계약이며, 지방자치단체 입찰

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(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)에 의거 대금 지급 시 정산한다.

나. 예외대상은 아래와 같다.

- 1) 보험료 등이 산정 되지 않는 계약
 - 2) 관련법령에서 정한 원가계산 기준에서 보험료 비목이 없는 경우
- 원가계산방법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등
 - 3) 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(또는 노임단가)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료 산정이 안 되는 경우
 - 4)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, 정산 대상 보험료가 사전에 미반영된 경우
- 다. 관련법령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대상용역은 다음과 같다.

- 1) 청소용역
- 2) 검침(檢針)용역
- 3)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
- 4)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

9. “산업안전보건관리비” 정산

가. 적용 대상은 산업안전보건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 계상하여야 하는 계약이며, 해당 시 관련 법령 및 공사 내부 지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·사용내역서 제출 및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.

나. 준공 완료 이후라도 외부 및 자체 감사 등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금액에 대한 부적합 사용 내역이 발견될 경우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10. 성과품 기준 및 납품

가. 작성기준

- 1) 최종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은 발주기관의 사전 협의와 승인을 거쳐야

하며,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진행과정 및 자료는 전산화하여 함께 제출한다.

나. 성과품 제출

1) 제출기간 : 계약종료일까지

2) 성과품 납품목록

구 분	성 과 품			비 고
	내 용	규 격	수 량	
행사운영 관련자료 일체	- 모든 성과품은 전산처리(USB)납품 (결과보고, 홍보물 디자인, 행사사진, 영상 등) - 각 자료는 편집 및 추가 인쇄가 가능한 자료로 각 폴더에 별도 저장 - PDF파일 및 원본파일(ai, psd, , ppt, hwp파일 등) - 포스터, 리플렛, 초청장 등 각종 온·오프라인 홍보물 디자인 콘텐츠 - 온·오프라인 홍보내역(행사 보도자료 목록, SNS 홍보 게시글 링크 등) - 행사사진, 영상 등 촬영본 일체(사진(보정본) 및 영상(편집본) 포함) - 각 프로그램별 계획서, 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정산내역서 등	-	1매	원본자료 USB 제출
※ 각종 성과품의 수록 내용 및 페이지, 편집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함.				

11. 기 타

가. 착오, 실수, 착각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지급(영수)된 계약대금, 지연배상금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오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시 정산한다.

나. 본 과업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,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른다.

[붙임]

사후원가 검토 기준 및 절차

[일반사항]

- ① 공동사업자는 회계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해당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.
- ② 본 계약은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사업완료 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확정된 정산금액을 사업비로 지급한다.
- ③ 사후원가 검토는 사업완료 → 정산 → 검사검수(외부기관) → 사업비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.
- ④ 사업비는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[정산관련]

- ① 공동사업자는 계약기간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.
- ② 공동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정산서 보고 후, 발주처의 검토를 거쳐 정산 확정 통지를 받아야 한다.
- ③ 공동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되, 집행구분과 금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집행금액은 지급될 사업비에서 제외된다.
- ④ 공동사업자는 사업비 통장으로 별도 개설하여, 통장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.

V. 과업의 특기사항

1. 사고 등 행사전반 안전관리 책임보험 가입(관련 서류 제출)

2. 행사의 운영

가. 본 계약의 과업내용에 맞추어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, 행사개최, 행사 후 부지정리 등 모든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.

나. 행사 중 발생 될 수 있는 불안전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여,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